

공정보도와 언론윤리-언론중재제도의 강화필요성-

이혜복

대한언론인회 회장 · 중재위원

신문 · 방송을 포함하여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써 국민적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언론이 지닌 보도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내외 정세는 물론, 사회주변의 중요사건의 진상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어떤 상황변화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판단의 재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매우 중대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은 권력에 아부함이 없이, 또 부정과 타협함이 없이, 국민을 위해 알려야 할 정보나 국민의 편에 서서 주장해야 할 긴급한 내용을 지체없이 전달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언론을 제사부로 칭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전지전능할 수 없고 신속, 정확,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한다 해도 때로는 오보를 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오보의 원인이 어디 있건 언론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오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쪽에서 볼 때는 언론의 역기능으로 인한 가공할 피해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오보를 낸 언론사는 오보로 판단된 시점에서 가장 신속, 명확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여 정정보도를 냄으로써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또는 기타 관련분야가 입은 부당한 피해를 구제하늘 조처에 나설 당연한 책임이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선 오보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이고 오보가 아니더라도 언론의 품위를 저해하는 어떠한 과오도 범하지 않도록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언론인으로서의 지녀야 할 윤리적 자세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선진 각국의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위해 우선 언론사마다 특유한 윤리강령을 제정,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사의 편집간부들 또는 언론사의 연합체가 공통된 윤리강령을 마련, 이를 준수함으로써 언론이 공기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사 자체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고 특히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있어 일반국민의 불만이 원만히 처리되기 어렵다는 실정을 감안, 일찍이 신문평의회 제도를 스웨덴, 노르웨이에 이어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채택한 바 있는가 하면 미국과 같이 일부 신문사에서 사내비평가제도 또는 옴부즈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또한 이웃 일본과 같이 일본신문협회가 제정한 윤리강령에 의거 언론의 품위 유지에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신문윤리강령이 이미 50년대 후반에 제정 운영되고 있으나 특히 오보로 인한 피해구제등 실제문제에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1981년에는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되어 법적 제소의 전치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언론중재위원회가 1981년에 설립된 후 금년까지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중재신청된 건수를 보면 1991년 8월말까지 모두 816건에 이르렀고, 초년도인 1981년에 44건에 불과하면 신청건수는 1989년부터 격증(121건), 1990년도에는 159건에 달했는데 1991년의 경우 8월말까지 이미 107건의 중재신청이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중재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1991년 8월말 현재 총 816건의 중재사건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209건(신청건수의 25.6%)이며 불성립은 오히려 이보다 더 많아 248건(신청건수의 30.4%)에 이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합의건수는 중재위원회 창설 첫해인 1981년의 중재합의율 20% 남짓(44건 신청에 합의 9건)에 비교하면 합의율이 꽤 늘어난 셈이기는 하나 매년 불성립된 건수나 합의가 취하된 건수보다 훨씬 적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의 경우 취하된 71건 중 39건(취하건수의 38%)이 언론사측에서 사과, 또는 해명성기사를 게재한다는 조건으로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은 측은 정정기사가 게재됨으로써 당연히 피해복구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본의 아니게 신청을 취하하는 까닭은 대개가 언론사측의 회유 또는 은근한 위협 등으로 인해 신청인측이 취하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개재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합의가 안될 경우 불성립으로 끝나도록 피신청인측(언론사측)에서 유도하면서 중재신청인측(피해자)을 회유, 압력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중재 아닌 편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경향을 어떻게 하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문제점의 하나는 시정권고의 실효성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소위원회로 하여금 지면심의를 통해 중재신청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언론침해사항(미성년피의자의 신원공표, 또는 성폭행을 당한 부녀자의 신원공개 등)을 관계 언론사에 시정권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1991년 8월말 현재 모두 724건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언론침해사례는 기초적인 훈련만 받고 또 기자가 어느 정도 유의만 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나 신생 언론매체 아닌 기성 중앙지에서까지 거듭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시정권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시정권고를 핀 후 일단 관련언론사의 발행인이나 편집 책 임자로부터 그와 같은 오류를 재차 범하지 않겠다는 회보를 받도록 하거나 시정 권고를 받은 사실을 해당언론사 지면에 공표토록 법조항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만 근년에 들어서서 일부 유력 신문·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 공정한 보도와 언론윤리 확립에 힘쓰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점으로 그 결과를 기대할 만하다.

- 보성전문 상과
- 서울신문 사회부장,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KBS 해설주간, 동 연수원장역임
- 현재 대한언론인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